

의안번호	2200374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D0675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 1,000만원(연평균 1억 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27조의9 신설)	102	102	102	102	102	510	102

주: 본 추계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실제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9 (광역·기초재정 관리위원회)	-시·도비보조사업의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둠 -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,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-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 -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9(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안 제27조의9에 따른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함)의 구성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관리위원회를 17개 시·도에 설치·운영하며, 각각 20명의 위원(위촉위원 12명)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에 따라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 - 관리위원회의 자료 인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시·도 기본경비 내에서 지출한다고 가정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안 제27조의9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억 1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를 12명으로 가정하고, 연 2회 회의를 개최

[표 2]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27조의9 신설)	102	102	102	102	102	5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실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